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과 해당 차량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 비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4.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2호바목”을 “제2조제2호사목”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3호사목”을 “법 제2조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 비용

2.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이 장착된 버스의 도입 비용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중전의 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다목, 가목, 나목, 라목, 사목,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

마.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 새로 도입되거나 교체되는 궤도차량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정거장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건설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

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 새로 건설되는 정거장

2. 이 영 시행 이후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기존시설의 2분의 1 이상이 교체되거나 그 규모가 기존시설의 2분의 1 이상 증가되는 궤도시설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가. 버스	1) 시내버스 (저상형)	○	○	○	○		○		○	○	
	2) 시내버스 (일반형)	○	○	○	○		○		○	○	
	3) 시내버스 (좌석형)	○	○	○	○		○			○	
	4) 농어촌버스	○	○	○	○		○		○	○	
	5) 마을버스	○	○	○	○		○		○	○	
	6) 시외버스	○	○	○	○		○			○	
나. 도시철도 차량		○	○	○			○		○	○	○
다. 철도차량		○	○	○	○	○	○	○		○	○
라. 궤도차량		○	○	○			○		○	○	○
마. 항공기		○	○	○		○	○	○		○	○
바. 선박		○	○	○	○	○	○	○		○	○
사. 광역철도		○	○	○			○		○	○	○

비고

위 표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궤도차량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하고,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정거장·지주 등 외부의 시설을 통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방송이 제공되는 경우: 안내방송
2.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하고, 별도 인력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3.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한 경우: 목적지 표시
4. 입석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통약자용 좌석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	교통약자가	장애인 전용주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로	이용 가능한 출입구	차구역				이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나. 버스정류 장											
다.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	○
라. 철도 역 사	○	○	○	○	○	○	○	○	○	○	○
마. 궤도차량 정거장	○	○	○	○	○	○		○	○	○	○
바. 환승시설	○	○	○	○	○	○	○	○	○	○	○
사. 공항시설	○	○	○	○	○	○	○	○	○	○	○
아. 항만시설	○	○	○	○	○	○	○	○	○	○	○
지.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 난 시설	매표 소	판매 기	음료 대	개찰 구	승강 장	보안 검사 장	여객 탑승 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나. 버스정류 장	○	○									○	
다.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라. 철도 역 사	○	○	○	○	○	○	○	○				○
마. 궤도차량 정거장	○	○	○	○		○		○				○
비. 환승시설	○	○	○	○	○	○	○					○
사. 공항시설	○	○	○	○	○	○			○	○		○
아. 항만시설	○	○	○	○	○	○						○
자.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 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 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 용주차구 역	교통약자가 이용 할 수 있는 휴게 실 및 지하도 상 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 는 음향신호기
가. 도로	○	○	○	○	○
나. 준용도로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조(교통수단) ----- ----- ---- 제2조제2호사목----- ----- ----- ----- ----- ----- -----.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 ----- ----- -----.
<신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제14조의2</u> ~ <u>제14조의5</u> (생략)	<u>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1.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 비용</u> <u>2.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이 장착된 버스의 도입 비용</u> <u>제14조의3</u> ~ <u>제14조의6</u> (현행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4772